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9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국·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을 통한 시정 핵심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1) 시·도 자율신설기구 근거 신설에 따른 목적규정 개정 (안 제1조)
- (2) 경제활성화 핵심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사람중심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기획관’을 보조기구로 신설 (안 제4조)
- (3)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신설(안 제128조부터 제1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5. 2. ~ 5. 7.)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9조의2”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

제5장제3절(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128조(설치)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9조(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0조(소관사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 기획관,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u>제9조</u>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② (생략)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 <u>제9조의2</u> ----- ----- ----- ----- ----- -.</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u>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u></p> <p><u>제128조(설치)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u></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신설에 관한 것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4)